

#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

(강석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68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민병주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서호연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 윤기섭, 윤영희, 이경숙, 이병운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정지웅, 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 최호정, 허·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52명)

## 1. 주문

- 서울특별시의회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적·경제적 참여 활동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존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이행 및 촉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적극적인 시책 마련을 촉구함
-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일반 기업과 동일한 경쟁선상에서는 열세일 수밖에 없으므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
- 또한,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」를 제정하고,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이행을 강력히 촉구함

## 2. 제안이유

-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서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사회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, 또한 일반 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할 수 없으므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음
- 그러나 2018년 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과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,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일반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
- 특히, 2019년 코로나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가중된 재정난 등 생산시설을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중증장애인의 사회적·경제적 터전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존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임
-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의 육성을 위해 보호 및 지원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,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이행 및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안함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,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, 「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4. 이송처

- 서울특별시, 서울시 25개 구청장, 시 산하 출연·투자·출자기관장, 서울특별시 교육감

##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」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

우리나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1989년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이후 2008년 8월에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, 소극적 시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,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,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을 제정했다.

이에 서울특별시는 2009년 7월 「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」를 제정했다. 당시 우선구매비율은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되었으며, 2016년이 되어서야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한 개정을 한 바 있다.

특별법이 제정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2022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‘2021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’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은 1.06%로 25개 기초자치구의 평균 1.5%로 보다 현저히 낮은 구매실적이다. 서울특별시는 2016년 100분의 2 이상의 권장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허울뿐이고 실제 2009년 7월 조례를 제정한 후 우선구매 실적은 담보 상태인 것이다.

현재 서울특별시 관내에서는 139개의 시설에서 약 4,200명의 중증장애인이 우선구매생산품을 생산하고 있다. 그러나 2019년 코로나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격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, 일반기업과 경쟁에서 더욱 더 취약해진 상황이다.

아울러,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법률상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201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과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는 명분을 들어 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은 수주를 받지 못하고 입찰참여를 위한 시간과 노동력을 허비하고 있다.

특히,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'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'가 제정되지 않은 7곳 중 한 곳이며, 2021년 구매실적은 0.78%로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 의무비율인 1%에도 미달하고 있다.

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이행 및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.

하나, 서울특별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목표비율인 100분의 2 이상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라.

하나, 서울특별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목표비율인 100분의 2 이상 이행을 위한 수의계약 방식을 의무화하라.

하나,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」를 제정하라.

2023. 3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